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50
----------	------

2018년 3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8년 2월 6일
- 다. 회부일 : 2018년 2월 9일
- 라. 상정일 :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2월 2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1) 제출이유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단체)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 개관일자 : 2005.11.01.
- 시설규모 : 부지 61,563㎡, 건물 5,016㎡ (지하2층, 지상4층)
- 지원시설 : 다목적활동장, 공연연습실, 창의융합과학공방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5) 민간위탁기간 : 3년 (2018년 7월 ~ 2021년 6월)
-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7) 소요예산 : 2,495백만원('18년)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은 관련 법령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광운학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2018.7~2021.6) 재위탁하려는 것임.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 개관일자 : 2005.11.01.
- 시설규모 : 부지 61,563㎡, 건물 5,016㎡ (지하2층, 지상4층)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원시설 : 다목적활동장, 공연연습실, 창의융합과학공방 등
- 위탁기간 : 3년 (2018년 7월 ~ 2021년 6월)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495백만원('18년)

-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 진로·직업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동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은 청소년시설을 수탁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시설로 전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광운학원은 창동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 및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산하시설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기 전까지 조치가 없었는바, 수탁기관의 규정 준수여부 및 평생교육국의 성실한 지도·감독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산하 청소년시설 채용 공고

2016년도 광운대학교 법인산하 청소년수련시설 하반기 대학생 정기자원봉사자 활동 내용

기관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활동기간	활동가능요일					시간	필요인원(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비고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 25p 발췌 >

- 4) 위탁 운영 시 운영원칙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법인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함
 -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법인명칭 사용 불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상 등록된 명칭 사용
- 광운학원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창동수련관이 감사²⁾에서 적발된 사항(17건) 대부분은 수탁기관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광운학원이 수탁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법령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금번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해 추후 법령 위반시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 등 민간위탁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감사위원회, 시립청소년수련관 특정감사(2014. 2.)

1.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선정 등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처리 부적정
2. 프로그램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련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
3. 자격기준 미달자 채용 및 공개경쟁 원칙 미준수 등 채용업무 부적정
4. 직원 및 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5. 법령상 시설기준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시정) 건의 등 업무소홀
6. 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이행 부적정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자체 규정 미제정 및 운영 미흡
8. 지출 및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9. 일 년 미만 재직자에게 퇴직금 지급.
10. 청소년수련관 비용으로 수탁법인 부담 이행보증 보험료 지급 후 미회수
11. 수입금 통합집행 등 운영지침 미준수 및 인건비 보전 부적정
12. 세출예산 편성액을 초과한 예산 집행 등 예산관리업무 부적정
13. 계약해지 상대방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등 계약관련 업무처리 소홀
1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15.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16. 종사자(직원, 강사) 보험료 부담분 산출 부적정
17. 국가 등 청소년 관련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유치노력 제고

○ 또한, ‘종합성과 평가결과’의 지적사항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³⁾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위탁기관의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성과보고서와 종합성과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평생교육국 제출 성과보고서 지적사항	종합성과 평가결과 지적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용률 향상을 위해 대책 마련 필요 ·재물조사표 미부착, 물품관리대장 관리개선필요 ·출장여비 지급 준수 필요

○ 한편, 평생교육국은 지도·점검·관리·감독의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바, 평생교육국의 조직, 인력, 전문성, 업무량 등 민간위탁 기관을 관리할 수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야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음.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50
----------	------

제출년월일 : 2018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단체)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 개관일자 : 2005.11.01.

- 시설규모 : 부지 61,563 m^2 , 건물 5,016 m^2 (지하 2층, 지상 4층)
- 지원시설 : 다목적활동장, 공연연습실, 창의융합과학공방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18년 7월 ~ 2021년 6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495백만원('18년)

- 산출근거

- 인건비 560백만원, 물건비 365백만원, 경상이전 101백만원, 자본지출 71백만원, 사업비 1,139백만원, 사업외 지출 224백만원, 예비비 등 3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이영민 (☎2133-4124)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사업내용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 시설규모 : 연면적 5,016m²(지하 2층, 지상 4층)
- 주요사업 :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등
- '18년예산 : 2,495백만원

○ 위탁 추진경과

- 1차 : 2005. 7. 27.~2008. 6. 30.(3년,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 2차 : 2008. 7. 27.~2011. 6.30.(3년,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 3차 : 2011. 7. 1.~2013. 6.30.(2년,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 4차 : 2013. 7. 1.~2016. 6.30.(3년,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 5차 : 2016. 7. 1.~2018. 6.30.(2년,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 성과평가 개요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평가대상 기간 : '15.1.1. ~ '16.12.31.(2년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 결과 요약

운영 및 관리 (11)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19)	인사 및 조직 (20)	환경 및 안전 (20)	대외 협력 및 홍보 (5)	종합평가 (10)	합계 (100)
11	11.6	19.2	18.4	18.2	5	10	93.4

○ 운영 및 관리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1. 운영 및 관리 (11점)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2.0	2.0	○ 중장기 발전계획은 수련관 설립추진에 적합하며 추진계획이나 특성화 계획 연도별 예산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 ○ 기관 운영계획은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 반영 세부 사업별 계획 및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기관 운영규정은 독자적 운영으로 제정되었고 공식적인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기구를 거쳐 규정이 관리되고 있음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0	2.0	
	1.2 기관 운영체계	7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 기준 및 시설장 여부	5.0	5.0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2.0	2.0	

○ 청소년 이용 및 참여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5점)	2.1 청소년 이용	9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0	4.0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 이용률은 74%로 우수 수준이고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이용률은 58.6%로 미흡함.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연간운영계획 보유 12회 이상 회의 운영 모니터링 의견반영 간담회 등을 하고 있음 ○ 동아리는 운영 지원 계획 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인원수 증가 공모사업 실적 자율적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음
			2.1.2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시설이용률	4.0	1.6	
	2.2 청소년 참여도	6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3.0	3.0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3.0	3.0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19점)	3.1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7	3.1.1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체계성	4.0	4.0	○ 연간 프로그램은 개발 계획서를 보유하고 개발 회의, 청소년 의견반영 실적이 있으며, 연간 프로그램 평가계획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활동이 수행되며,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되었음. ○ 프로그램 수는 120.5점으로 매우 우수하며 사업비는 85%로 우수에 해당(기관운영을 위한 수익용 프로그램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은 적절하며, 평가계획 및 예산산출 근거 등을 보유하고 있음
			3.1.2 연간 프로그램 평가 운영의 적절성	4.0	4.0	
	3.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12	3.2.1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프로그램의 비율	4.0	4.0	
			3.2.2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사업비 수준	4.0	3.2	
			3.2.3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4.0	4.0	

○ 인사 및 조직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4. 인사 및 조직 (20점)	4.1 직원 확보율	8	4.1.1 직원 확보의 수준	4.0	2.4	○ 직원확보율은 3% 수준이며, 수용정원(650명) 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은 2.5%로 매우 우수한 편임 ○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 실적은 80시간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며, 직원 대상 안전교육 및 폭력예방교육도 지침대로 시행되고 있음 ○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은 매우 우수한 편으로 직원 자녀의 학비 보조수당 지급과 대학원 학비 할인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잘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직원 강사, 일용직까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안전교육 내부, 외부 실적 모두 우수함 ○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연4회,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실시함
			4.1.2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 수	4.0	4.0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12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3.0	3.0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3.0	3.0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2.0	2.0	
			4.2.4 직원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2.0	2.0	
			4.2.5 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여부	2.0	2.0	

○ 환경 및 안전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5. 환경 및 안전 (20점)	5.1 시설환경 및 안전	20	5.1.1 수련시설 시설기 준 준수여부	3.0	3.0	○ 수련시설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 나 향후 안전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 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보고를 시행하고 있음 ○ 지침에 따라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청소년 대상 안전관리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5.1.2 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성	4.0	3.2	
			5.1.3 안전보험 가입	4.0	4.0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4.0	3.0	
			5.1.5 청소년의 안전관리	5.0	5.0	

○ 대외 협력 및 홍보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6. 대외 협력 및 홍보(5점)	6.1 대외협력 및 홍보	5	6.1.1 대외협력 및 연계 정도	3.0	3.0	○ 대외 협력 및 연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계실적을 갖추고 있 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가입하였고 회원 자격을 유지함 ○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 한 홍보실적을 갖추고 있음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2.0	2.0	

○ 종합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점수	평가결과
7. 종합 평가(10점)	7.1 종합평가	10	7.1.1 지방자치단체의 시 설발전 지원 노력수준	5.0	5.0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 증가율은 약 11% 사업 및 업무 협조는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프 로그램 신고실적이 있고, 시설장의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한 편임.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 력실적, 포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문화존 등을 수행하고 있음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0	5.0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실적**

(단위 : 원)

○ **총괄 정산내역**

연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2017	2,900,000,000	2,434,782,912	202,640,014
2016	2,791,622,000	2,389,554,802	222,986,956

○ **세부 집행내역**

연도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등
2017	2,434,782,912	414,502,130	311,047,325	67,813,628	98,778,500	1,542,641,329
2016	2,389,554,802	396,661,850	260,714,109	81,157,599	52,751,010	1,598,270,234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재위탁 협약 체결**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로 위탁법인 선정, 협약 체결

○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

-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